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5가합56225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주식회사 B

변론 종결2016. 6. 10.

판결 선고2016. 7. 1.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67,100,265원 및 그 중 263,989,348원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5. 11. 2.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김포시 C 공장용지 1650.2m²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2015. 4.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A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5. 4. 20. 접수 제3629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이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 A이 대표로 있는 D의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각 대출받는 과정에서,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금액 및 보증기한을 정한 각 신용보증약정(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1차 보증약정', 국민은행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2차 보증약정'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증기한을 변경하였다.

1차보증	2012. 3. 20.	72,000,000	2013. 3. 19. (2015. 3. 19.)	E	한국씨티은행	일반자금대출
2차보증	2013. 6. 5.	195,500,000	2014. 6. 4. (2015. 6. 4.)	F	국민은행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나.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2. 3. 20. 씨티은행으로부터 80,000,000원을 변제기 2013. 3. 19.로 정하여(이후 보증기한의 변경으로 변제기한은 2015. 3. 19.로 변경되었다), 2013. 6. 10. 국민은행으로부터 230,000,000원을 변제기 2014. 6. 4.로 정하여(이후 보증기한의 변경으로 변제기한은 2015. 6. 4.로 변경되었다) 각 대출받았다(이하 모두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와 피고 A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이 원고에게 ① 대위변제금, ②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부터 피고 A이 대위변제금을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③ 위약금, ④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가 정한

자연손해금률은 2015. 6. 24.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라. 그 후 피고 A은 이 사건 각 대출금 이자 상환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피고 A을 대신하여 2015. 6. 24. 씨티은행에 1차 보증약정에 따라 연체 대출원리금 73,567,402원(= 대출원금 72,000,000원 + 이자 1,567,402원)을 변제하고, 같은 날 국민은행에 2차 보증약정에 따라 연체 대출원리금 190,421,946원(= 대출원금 187,000,000원 + 이자 3,421,946원)을 변제하였다.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채권보전비용은 2,508,837원이고,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은 1차 보증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397,670원과 2차 보증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204,410원의 합계 602,08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A: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67,100,265원(= 1차 보증약정 대위변제금 73,567,402원 + 2차 보증약정 대위변제금 190,421,946원 + 채권보전비용 2,508,837원 + 위약금 602,080원) 및 그 중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263,989,348원(= 1차 보증약정 대위변제금 73,567,402원 + 2차 보증약정 대위변제금 190,421,946)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6.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5. 11. 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2)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호증, 을나 제2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제1항 제4호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이상 관련인정보 포함),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원고는 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씨티은행은 2015. 2. 22. 피고 A을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로 최종 부실 처리하였고, 이를 2015. 4. 1.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14. 6. 10. 피고 A으로부터 김포시 C 공장용지 165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20,8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6.

15.부터 같은 해 9. 15.까지로 하는 'G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후 피고 회사가 위 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공장 432㎡ 및 일반철골구조 1층 식당, 화장실 44㎡, 2층 사무실 37.2㎡(이하 위 공장과 식당 등을 '이 사건 공장건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피고 A은 2015. 2. 3. 위 공장건물 등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 회사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피고 A은 2015. 4. 20.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20,860,000원으로, 채무자를 피고 A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5. 4. 20 접수 제3629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이 이미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비록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사후구상금채권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미 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A에 대하여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가까운 장래에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에 대하여 사후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원고가 2015. 6. 24. 씨티은행 및 국민은행에 피고 A을 대신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사후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과 사후구상금채권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경우에 한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 47113, 4712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 2,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은 적극재산으로 시가 990,12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 250,916,000원 상당의 이 사건 공장건물 등의 합계 1,241,036,000원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A의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94,391,813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신한은행 대출금	822,069,806원
2	씨티은행 대출금	80,000,000원
3	국민은행 대출금	230,000,000원
4	남인천세무서	10,735,680원
5	김포세무서	5,044,690원
6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채무원금	18,983,540원
7	동아출판주식회사 채무원금	8,295,155원
8	B 주식회사 채무원금	449,071,620원

1	신한은행 대출금	822,069,806원
9	현대캐피탈	8,977,000원
10	KB국민카드	1,000,000원
11	H 가압류 채권액	31,621,332원
12	국민건강보험공단 채납보험료원금	23,701,000원
13	김포시	4,891,990원
합계	1,694,391,813원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A의 적극재산으로 위 피고가 거주하는 '인천 남동구 I 아파트 1109동 502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포함되어야 하고, 위 표 기재 소극재산 중 순번 제7, 9, 11번에 관하여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이루어진 2015. 4. 20. 이전에 발생한 채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위 주장에 따라 피고 A의 적극재산에 위 I 아파트에 관한 2015. 4.경 평균 전세가 215,000,000원을 포함시키고, 소극재산에서 위 표 기재 순번 제7, 9, 11번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피고 A의 적극재산은 1,565,916,000원(=1,241,036,000원 + 215,000,000원), 소극재산은 1,645,498,326원(= 1,694,391,813원 - 8,295,155원 - 8,977,000원 - 31,621,332원)이 되어 여전히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

3) 다음으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2015. 4. 9.자로 신한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990,12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4. 20. 당시 신한은행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822,068,80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치가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피고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여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고 A의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회사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 회사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피고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420,86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한다.

피고 회사가 피고 A에 대하여 420,86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신한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 회사도 피고 A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 등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공사대금에 관한 공정증서(을나 제5호증)를 작성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계약 당시 피고 A의 재산상태에 관한 인식을 한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수익자인 피고 회사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회사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재판장판사전지원

판사어준혁

판사김초하